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23. 5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허가·승인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서류 또는 도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안 제2조)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 및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명세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3조)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5. 00. ~ 2023.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제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규정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1)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실시계획 승인 효력정지 1개월 1) 승인취소, 원상회복 명령 2)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다.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 공사중지 1개월 2) 인공구조물이나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3)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4. 사정 변경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4호	허가취소
5. 법 제33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법 제34조제1항제5호	허가취소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나. 법 제5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 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다.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 우 라. 다목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취소 효력정지 1개월 허가취소
---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 청 인 (시 행 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칭			
위 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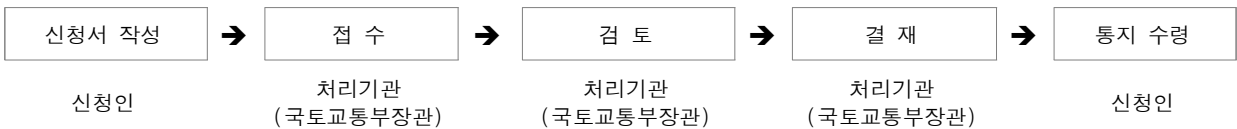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허가서

허가번호	
신 청 인 (시 행 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명칭	
위 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허가조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